KOSHA GUIDE H - 116 - 2019

> 이산화질소 노출 사업장의 중독 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

> > 2019.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윤경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본부 산업보건부

- 제·개정 경과
- 2013년 7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9년 9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P-58 201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 KOSHA GUIDE H-57 2015.
- NIOSH. NIOSH Occupational Health Guideline for Nitrogen Dioxide. 1978
- NIOSH. Criteria for a Recommended Standard.;Occupational Exposure to Hydrogen Cyanide and Cyanide Salts, 1976
- ATSDR. ATSDR's Medical Management Guidelines(MMGs): Nitorgen Oxides (NO, NO2, and others). 2010.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7(사업주 등의 협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제2장(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제10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 강장해의 예방)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9년 10월 1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KOSHA GUIDE H - 116 - 2019

이산화질소 취급 근로자의 중독 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제2장(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및 제3편제10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산화질소 취급 근로자의 중독을 예방하고 응급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이산화질소의 물리화학적 특성

이산화질소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다음 <표 1>와 같으며 일산화질소 및 질산염들과 혼동되지 않게 주의한다.

<표 1> 이산화질소의 물리화학적 특성

구분	특성	구분	특성		
CAS No	10102-44-0	끓는점	21.15 °C		
분자식	NO_2	증기밀도	(끓는 점에서 공기 = 1) 1.58		
모양 및 냄새	적갈색의 발연성 액체 또는 기체이 며 독한 냄새가 난다.	증기압	720 mmHg (20 ℃)		
분자량	46.01	증발률	1 이상		
비중	1.448(액체) (20 ℃)	냄새의 서한도	0.12 ppm		
녹는점	-9.3 ℃	용해도	물에 잘 녹음		
기타	분해될 때에는 질소산화물과 같은 유독 가스와 증기가 발생한다.				

5. 이산화질소 중독의 증상 및 노출 상황

5.1 이산화질소 중독의 특성

이산화질소는 호흡기 자극제로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고 후유증으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노출 후 2~3 주가 지난 후 나타나는 지연성 폐질환은 일명 폐쇄성기관지염(Bronchiolitis obliterans)이라고 알려진 질환으로 사망위험이 있다.

- (1) 노출 후 급성기에 나타나는 이산화질소 중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가) 이산화질소의 주요 중독은 호흡기에서 나타나는데, 특징적으로 2~3주 간격으로 두 단계에 걸쳐 중독이 나타난다. 첫 번째 단계는 노출된 이산화 질소의 노출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증상은 <표 2>와 같다.

<표 2> 이산화질소 노출수준에 따른 증상

이산화질소 노출수준	이산화질소 중독증상
0.12 ppm	자극적인 독한 냄새로 이산화질소 노출을 파악할 수 있으나 곧 후각이 마비된다.
25 ppm	흉부가 따갑고 아플 수 있고 눈과 코 등 점막에 자 극증상이 나타난다.
50 ppm	폐부종 및 아급성 만성 폐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주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난다.
100 ppm	1시간 후 폐부종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호흡곤란, 객혈, 청색증 등 전신증상이 나타난다.
250 ppm	노출즉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자극증상후 1시간 이내 폐부종으로 청색증, 빈맥 등 전신증상을 보이며 사망할 수 있다.

- ① 첫 번째 단계에서 흉부 엑스선 소견은 정상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 결절과 같은 음영이 나타나고 폐활량은 환기량이 다소 감소하는 소견을 보인다.
- ② 높은 수준의 기중 이산화질소에 한 번 노출되어도 반응성 기도장애증후군 (Reactive Airway Dysfunction Syndrome)이 나타나고, 노출 후 1달 이내까지 임상적으로 천식과 같은 소견, 즉 숨이 차고, 마른기침 등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나) 호흡기에 대한 지연성 이산화질소 중독은 노출 후 첫 번째 중독이 회복된 후 수 주 이후 나타나며, 종종 치명적인 임상 경과로 진행된다.
 - ① 흉부엑스선 상 좁쌀 같은 음영을 보이다가 점차 음영이 커진다.
 - ② 임상적으로 기관지염, 폐기종 및 기관지폐쇄증 소견을 보인다.
- (다) 이산화질소는 대부분 가스를 흡입하며 노출이 되나, 섭씨 21도 미만에서는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액체질소를 입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도 상당량이 흡수된 경우 유사한 중독이 나타날 수 있다.
- (2) 미량의 이산화질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은 호흡기 감염이 잦아 지고, 모세기관지의 폐쇄가 발생하면 폐기능검사에서 제한성 및 폐쇄성 폐 기능장애 소견을 보이는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H - 116 - 2019

- (3) 이산화질소 중독이 발생한 후 호흡기계에 기관지폐쇄증과 같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 노출 후 수 일에서 수 주간 점차 입맛이 없어지고, 전신의 쇠약감, 발열, 오한과 숨이 차고 기침, 호흡곤란, 각혈, 피부의 청색증,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종종 감염질환에 의한 호흡 곤란증후군이나 속발성 결핵처럼 보여 잘못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 (4) 이산화질소 노출로 인한 발암 가능성은 없다.
- (5) 이산화질소는 동물실험에서 태아의 기형이나 유전자 변이를 유발하는 독성을 보여서, 임신한 여성은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 5.2 이산화질소 중독에 대한 위험이 높은 작업조건
 - 이산화질소는 다음과 같은 작업공정에서 많이 노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 (1) 질산염으로 급속표면을 코팅하고 가공하는 공정
 - (2) 황산 및 질산으로 화학물질 원 재료를 제조하는 공정
 - (3) 엔진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부산물로 노출될 수 있다.
 - (4) 질소섬유(Nitrocellulose) 및 광택이 나는 페인트를 제조하는 공정
 - (5) 로켓탄환 및 폭발물의 제조와 폭발 검사공정
 - (6) 농작업에서 사료나 퇴비의 보관시 밀폐공간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마초 저장고 농부병, silo filler's disease).
 - (7)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얼음 표면을 고르는 기계의 연소가스인 이산화질소
 - (8) 미사일의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액체질소산화물이 유출되어 중독된 경우
 - (9) 밀폐공간에서 산소토치작업에 의한 급성중독

6. 이산화질소 중독 발생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고 현장을 세 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구역별로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

6.1 위험구역(Hot zone)

위험구역은 재해가 발생하여 이산화질소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구역을 말한다.

(1) 위험구역 운영지침

- (가) 위험현장에 들어가서 구조활동을 하는 사람을 먼저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 ① 구조자의 호흡보호구는 양압 자가호흡장치(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 또는 송기형 호흡보호구를 갖춘다.
 - ② 이산화질소는 피부로도 잘 흡수가 되어서 액상은 물론 이산화질소 증기 노출로도 흡수될 수 있으므로, 장시간 노출이 우려될 때에는 피부 자극 및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이 투과되지 않는 피부 보호복이 필요 하다.

(나) 응급 구조의 원칙

- ① 이산화질소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의 기도(Airway)를 확보하고, 적절한 호흡(Breathing)과 맥박(Circulation)을 확인한다.
- ② 이상이 있으면 딱딱한 들것 위에 누이고 경추보호대를 착용시켜 경추를 보호한다.
- (다) 위험구역에서 중독이 의심되는 피재자가 걸을 수 있으면 위험구역에서 걸어서 나오게 하고, 걸을 수 없으면 들것에 뉘이거나 양 팔로 끌어 데리고 나온다.

H - 116 - 2019

6.2 응급처치구역(Decontamination zone)

응급처치구역은 위험구역에서 구조된 피재자와 조금이라도 노출이 된 피재자들 모두에게 일차적으로 방문하여 노출 현황을 파악하고 의학적 관리대책을 세우는 곳이다. 지연성으로 나타나는 호흡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처치 구역에서는 반드시 세척을 하고 추가적인 오염원을 제거해야 한다.

(1) 응급처치구역 운영지침

(가) 이산화질소 중독이 의심되는 피재자를 처치하는 사람들은 응급구역에서 착용한 의복 등을 갈아입어 추가적인 오염원을 제거한다.

(나) 응급처치의 원칙

- ① 환자의 기도(Airway)를 확보하고, 호흡(Breathing)과 맥박(Circulation)을 확인한다.
- ② 경추는 딱딱한 바닥 위에 경추보호대로 보호한다.
- ③ 이산화질소 중독이 있는 피재자에게 최대한 산소와 이산화질소 해독제를 투입하는 등의 전문응급처치(Advanced treatment)를 받게 이송하며 기초 응급처치(Basic decontamination)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 (다) 기초응급처치(Basic decontamination)의 세부내용
- ① 이산화질소에 노출된 근로자 중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안내를 해서 스스로 오염된 옷을 두 번 밀봉하여 파기하도록 지도한다.
- ②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은 흐르는 물에 20분간 충분히 씻어낸다.
- ③ 노출된 눈은 자극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흐르는 식염수나 증류수에서 20분간 충분히 씻어 낸다. 만약 눈에 콘택트렌즈를 끼고 있다면 제거하고 눈을 세척한다.

H - 116 - 2019

④ 이산화질소가 포함된 용액을 입으로 들이마신 경우는 억지로 토해내게 하지 말고, 활성탄도 투여하지 않지만, 의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100-200cc의 물이나 우유를 마시게 한다.

(라) 전문응급치료(Advanced treatment)

- ① 전문응급치료는 원칙적으로 전문 응급의료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나, 매우 높은 수준의 이산화질소의 급성 노출은 급성 기관지폐쇄증 및 심정지 등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유발한다.
- ② 과량의 이산화질소를 취급하는 현장에서는 재해현장에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6.3. 보호구역(Support zone)

보호구역에는 응급처치구역에서 처치가 끝나거나,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근로자를 배치한다. 보호구역에서 피재자를 관리하는 사람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1) 보호구역 운영지침

(가)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었던 근로자의 의복 등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다시 점검해서 다른 근로자들의 간접 노출을 예방한다.

(나) 보호구역의 워칙(ABC)

- ① 응급조치구역에서 확보한 기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
- ② 외상이 의심되면 경추를 고정하고 보호대를 착용하게 한다.
- ③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다.
- (다) 눈의 세척 등 추가적인 처치를 할 수도 있다.

H - 116 - 2019

6.4 재해현장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

근로자는 응급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구조팀이나 전문의료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기다리는 동안 다음과 같은 응급처치를 한다.

- (1) 기중 이산화질소 가스에 노출된 경우
- ① 코와 입을 옷으로 감싸고 많은 양의 이산화질소를 흡입하지 않도록 숨을 참고 외부 공기가 있는 곳으로 나간다.
- ② 이산화질소에 노출된 동료근로자를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곳으로 데려온다.
- ③ 안전한 곳으로 데려온 후 기도를 확보하도록 입을 벌리고 정상적인 호흡과 목이나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한다.
- (2) 액상 이산화질소에 노출된 경우
 - ① 눈이 액상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면 즉시 많은 양의 흐르는 물에 눈을 씻는다. 만약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으면 즉시 눈에서 제거한다.
 - ② 피부가 액상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면 즉시 흐르는 물에 피부를 씻는다.
 - ③ 액상 이산화질소에 젖은 옷을 벗고 즉시 물에 씻는다.
- 6.6 사업장에서 응급조치를 마친 후 근로자의 관리
 - (1) 노출 된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피재자도 노출 후 3-30시간 이후 지연성으로 호흡기에 중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단 오염원을 제거한 피재자는 모두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 (가) 노출 후 첫 48시간 이내에는 의료기관에서 관찰하며 폐부종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독이 없는 지 관찰한다.

H - 116 - 2019

- (나) 이산화질소 용액을 입으로 흡입한 피재자는 이송 중 구토할 것을 대비해서 일회용 타올과 토사물을 담아 밀봉할 수 있는 비닐 팩을 준비하여 이송한다.
- (2) 이산화질소 가스를 호흡 중 잠시 들이마신 정도이고,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의복 등에서 오염원이 확실히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귀가시킨다.
- (3) 귀가할 때에는 이름, 주소, 부서, 연락처도 확보하고 <부록 1.이산화질소에 노출된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과 같은 안내문을 주어 해당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 (4) 이산화질소를 입으로 흡입하거나 피부나 눈에 직접 이산화질소를 접촉한 피재자는 귀가 여부를 결정할 시점에서는 증상이 없어도 시간이 지난 후 폐부종 등 호흡기계 중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소한 24-36시간까지는 집중 관찰을 해야 한다.
- (5) 응급의료기관에서 24~36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퇴원을 고려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이름, 주소, 부서, 연락처도 확보하고 <부록 1.이산화질소에 노출된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과 같은 안내문을 주어 해당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7. 이산화질소 중독의 예방 및 관리

7.1 이산화질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 점검표

사업주는 이산화질소를 취급하는 공정에서 다음 [표 4]와 같은 사전예방 점검 표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안내하여 재해를 예방한다. 또한 안전보건책임자가 점 검표를 확인하고 보호구를 적절히 관리하게 한다.

<표 4> 이산화질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 점검표

순 서	내용		점검	
	이산화질소 취급 지역의 작업 전후 점검표	예	아니오	확인
1	취급 및 발생지역으로 출입하기 전에 적절한 호흡보호구가 비치되어 있다.			
2	취급 및 발생지역의 이산화질소 노출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예, 가스모니터링 기계 및 직독식 검지관)이 비치되고 있다.			
3	취급 및 발생지역의 이산화질소 노출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예, 가스모니터링 기계 및 직독식 검지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4	취급 및 발생지역의 이산화질소 노출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예, 가스모니터링 기계 및 직독식 검지관)에 따라 기중 이산화질소 노출수준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된다.			
5	이산화질소는 작업공정서에 따라서 필요시에만 필요량을 취급한다.			
6	이산화질소를 취급한 후 밀봉하고 누출되지 않는 지 육안점검한다.			
7	이산화질소를 취급한 후 취급지역에서 나온 후 이산화질소 노출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예, 가스모니터링 기계 및 직독식 검지관)을 통하여 노출수준을 점검한다.			
	이산화질소 노출 대비 호흡보호구 평가			
1	매달(자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로) 호흡보호구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한번이라도 이산화질소 취급지역에서 사용한 보호구는 캐니스터 등 일부를 교환한다.			
3	송기형 호흡보호구는 분기별로 기류가 적절히 통하는지 점검한다.			
4	송기형 호흡보호구는 필터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고 사용한 필터는 폐기한다.			
5	양압식 호흡보호구의 작동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한다.			

7.2 사업주의 이산화질소 중독 예방 및 응급조치

사업주는 사업장을 이산화질소의 노출 위험에 따라 관리의 중요도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고 위험에 따른 적절한 보호 및 응급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평소 정기적인 교육과 실습을 거쳐 훈련된 응급 구조대와 적절한 장비를 마련 하고, 현장에서 이산화질소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훈련을 한다.

(1) 이산화질소 노출 위험에 따른 사업장의 시설 관리

H - 116 - 2019

- (가) 이산화질소 가스가 있거나 의심되는 곳에 작업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 (나) 이산화질소의 자연환기 경로를 파악하여 기류의 방향을 표기한다.
- (다) 이산화질소를 포함한 용기 및 장비는 주의 표기를 한다.
- (라) 액상의 이산화질소를 취급하는 경우, 작업 중 액체가 튀어 눈 등 점막을 통해 흡수되지 않도록 고글을 착용하고, 노출 사고에 대비해서 눈을 세척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비치한다.
- (마) 이산화질소의 피부 보호를 위해 방수 코팅이 된 화학 보호복을 구비한다.
- (바) 이산화질소 누출시 응급대응 조치와 업무지속계획을 세운다.
- (2) 이산화질소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 관리
- (가) 이산화질소의 누출 부위의 밀폐와 패쇄 방안을 마련한다.
- (나) 이산화질소를 퍼지(Purge)하고 환기시킬 수 있는 설비를 보강한다.
 - ① 특히 이산화질소를 다룬 보관 탱크 등을 보수할 때에는 완전히 탱크를 비운 후 물을 가득 채우고 비우기를 2회 반복한 후, 신선한 공기로 퍼지한다.
 - ② 탱크 보수를 위해 작업자가 진입할 때에는 퍼지를 한 후에도 위생보호구를 온전히 착용한 후 들어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다.
- (다) 강제 환기 시설을 마련한다.
- (라)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배포한다.
- (3) 이산화질소의 중독 예방 및 응급조치 교육
- (가) 사업장 내 안전 교육을 병행한다.

H - 116 - 2019

- (나) 이산화질소의 건강영향을 교육한다.
- (다) 특히 이산화질소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다음을 포함한다.
 - ① 적절한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 ② 이산화질소 누출사고 발생 시 경보에 대처하고 안전하게 피신하는 방법
 - ③ 이산화질소 노출 시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선택하고 착용하는 방법
 - ④ 보호구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
 - ⑤ 비상시 응급조치 대처방안
- (4) 이산화질소의 누출사고 발생 시 처리 원칙
- (가) 적절한 호흡보호구 및 보호의복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도 현장에 들여보 내지 않도록 한다.
- (나) 이산화질소가 누출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현장을 조치한다.
 - ① 누출된 지점을 확인한다.
 - ② 누출되는 가스를 환기하고 국소배기를 시행한다.
 - ③ 가스형태로 배출되는 경우, 가스의 누출 및 공급을 중단한다.
 - ④ 만약 누출지점이 관 형태(실린더, cylindar)라면 관을 제거하고 봉쇄한다.
 - ⑤ 액상 형태로 누출되는 경우 국소배기 장치가 있는 안전한 곳에서 기화시켜 배기시키고, 위의 순서대로 가스 형태의 이산화질소의 누출 설비를 관리 한다.

KOSHA GUIDE H - 116 - 2019

부록 1. 이산화질소에 노출된 재해자의 노출 후 주의사항

주의해야 할 사항		확인	
		아니오	
노출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중 하나의 이상 증상이나 정후가 나타 나면 근처의 응급실에 방문하십시오 - 기침, 쌕쌕거리는 호흡, 호흡곤란, 숨참 - 흉통 또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 속이 쓰리거나 구토가 나옴 - 두통 - 피부가 점점 빨갛게 되고 고름같은 진물이 나옴			
※ 위와 같은 증상이 없다면 추가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출 후 1~2일 이내에는 격한 신체 운동을 피하십시오. ※ 자동차나 기계 운전 등 일상적인 운동은 괜찮습니다.			
업무 내용이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격한 신체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작업복귀에 대해 보건관리자 및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협의합니다.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 호흡기계의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출 후 최소 24시간 이내에는 술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 소화기계의 손상 및 일반적인 손상의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이 외에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면 회사의 보건관리자, 주변의 의료기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연락을 합니다.			